

# 충청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( 초안요약문 )

2019. 09



충청북도



#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

## 1.1 계획의 배경

-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소비의 증가는 자원의 고갈을 넘어 환경적·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야기.
- 전 세계적으로 ‘채취-생산-소비-폐기’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‘순환경제’(circular economy) 정책 추진 중
-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고, 좁은 국토 면적으로 추가적인 매립지 건설이 어려워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급.
-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으로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정(‘16.5 공포, ‘18.1 시행)
- 동 법에 따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담은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(‘18~‘27) 수립 .
-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투자계획을 포함한 충청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(‘18~‘22) 수립 필요.

## 1.2 계획의 목적

- 본 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,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제시 및 충청도내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·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자원순환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고,
-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2조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「충청북도자원순환시행계획」 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예측·분석, 영향의 저감 대책마련 등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, 건전성, 지속가능성과 부합성, 일관성 있는 검토를 전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 1.3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근거

-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

< 표 1.2 - 1 >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2조

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2조(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	
①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②	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
③	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④	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, 제출 및 승인·변경승인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1.4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계획은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[별표2]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.

< 표 1.2 - 2 >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구 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요청시기
거.폐기물·분뇨·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	3)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	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

자료)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[별표 2]

### 1.5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년 05월 : 충청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
- 2019년 06월 19일 ~ 07월 05일 :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개최
- 2019년 07월 25일 ~ 08월 08일 :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- 2019년 09월 :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및 공고·공람(예정)
- 2019년 10월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작성 및 협의요청(예정)

## 1.6 계획의 내용

### 가. 계획명

- 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

### 나. 계획의 범위

#### (1) 공간적 범위

- 충청북도 전지역(3개시, 8개군)

#### (2) 시간적 범위

- 계획기간 : 2018~2022년(5년간)
- 기준연도 : 2016년, 목표연도 : 2022년
- 계획목표
  -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현황제시
  - 2018~2027년 10년간 목표설정
  - 2018~2022년 실천목표 제시

### 다. 계획시행자

- 충청북도

### 라. 승인기관

- 환경부

### 마. 계획의 세부내용

#### (1) 기존 자원순환 관련 계획의 성과평가

- 기존 기간(2008년~2017년)동안 자원순환 정책(폐기물관리 정책을 포함)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.
- 성과평가는 자원순환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와 부문별 세부평가를 병행.

## (2) 지역 내·외 및 국제적 환경변화와 전망 및 관련계획의 검토

자원순환 정책방향(국외여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UN, OECD, EU, 독일, 일본 관련계획 검토</li> </ul>
자원순환 관련 정책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(2018년~2027년)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(2016년~2035년)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충청북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(2012년~2021년)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충청북도 환경보전계획(2016년~2025년)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계획(2018년~2022년)</li> </ul>

## (3)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여건변화와 전망

- 최근 10년간(2008~2017) 충청북도 폐기물(생활,사업장,건설,지정폐기물 등) 발생량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의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
  - 폐기물발생량은 2018년 18,384.2톤/일에서 2027년 24,579.0톤/일로 33.7%증가 예상.

## (4) 계획의 목표설정

### (가) 자원순환의 목표 수립

구분		목표	비고
원단위 발생량	국내 총생산당폐기물발생량	113.7→90.9톤/일	▼ 20.0%
	인구당 생활폐기물발생량	1.30→1.06kg	▼ 19.0%
순환이용률		52.3→61.0%	▲ 8.7%
최종처분율		22.1→7.3%	▼ 14.8%

### (나) 자원순환 방향 설정

자원순환 방향 설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감량-재사용-재활용-에너지재활용-안전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산·소비 단계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, 제품의 재사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의 근원적 발생 저감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설정</li> <li>에너지재활용 위주가 아닌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 체계 마련</li> </ul> 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이행평가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·군별 자원순환 추진실적 보고 철저, 잔재물 배출계수 등 지속적으로 개선 및 관리강화</li> </ul> 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 시설 효율개선 및 재활용 기반 확충 주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후 소각시설 현대화 등 처리 효율 향상, 선별·재활용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잔재물 발생 최소화·재활용 극대화</li> </ul> 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동체 책임의식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친환경적 생활양식 정착</li> <li>쓰레기 감량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 추진</li> </ul> </li> </ul>

## (5)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

- 4개 분야 46개 세부추진과제 도출(생산단계 2, 소비단계 12, 관리단계 26, 재생단계 6)

구분	세부과제	분야	주체
<b>생산</b>			
업종별 자원생산성 제고	◦ (국)순환자원 인정기업 지속 확대	사업장	1
폐기물 원청감량 촉진	◦ (국)사업장 성과관리 제도 단계적 참여 확대	사업장	1
<b>소비</b>			
생활속 폐기물 발생 억제	◦ (국)대체가능한 1회용품 사용 제로웨이스트 확대 (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시설로 확대)	생활	1
	◦ (국)불필요한 과대포장 근절	생활	1
	◦ (국)시군 자원순환성과관리제 목표 설정 및 관리	생활	2
	◦ (국)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단계적 현실화 추진	생활	3
	◦ (국)RFID보급 확대 및 홍보교육 추진	생활	1
	◦ (타)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	생활	1
	◦ (타)재활용가능 폐기물 무인회수기 설치	생활	1
자원효율적 친환경 소비 촉진	◦ (국)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·운영	생활	2
	◦ (국)재활용나눔장터 활성화	생활	1
자원순환 문화 조성·확산	◦ (국)대형마트, 프렌차이즈점 등 자발적 협약 이행 상황 모니터링 강화	생활	1
	◦ (국)충북도 농촌지역 자원순환마을 확대	생활	1
	◦ (타)재활용 인식제고 및 시민참여 확대 (폐자원 재활용 공모전 개최)	생활/사업장	1
<b>관리</b>			
배출·수거·선별체계 혁신	◦ (국)재활용도움센터 시범설치	생활	1
	◦ (국)농촌 영농집하장 확충 시설개선	생활	2
	◦ (충)단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	생활	1
	◦ (충)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	생활	1
	◦ (충)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	생활	1
	◦ (충)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	생활	1
	◦ (충)진천, 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	생활	1
	◦ (충)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사업	생활	1
	◦ (충)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사업	생활	1
	◦ (충)충주시 재활용선별시설 개선사업	생활	1
	◦ (충)충주시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사업	생활	1
	◦ (충)충주시 자원순환센터 설치사업	생활	1
	◦ (타)시군 재활용품 수거운반방식 효율적 전환, 폐비닐 별도 요일 분리배출 시범시행(선별률 최대 70%증대)	생활	3

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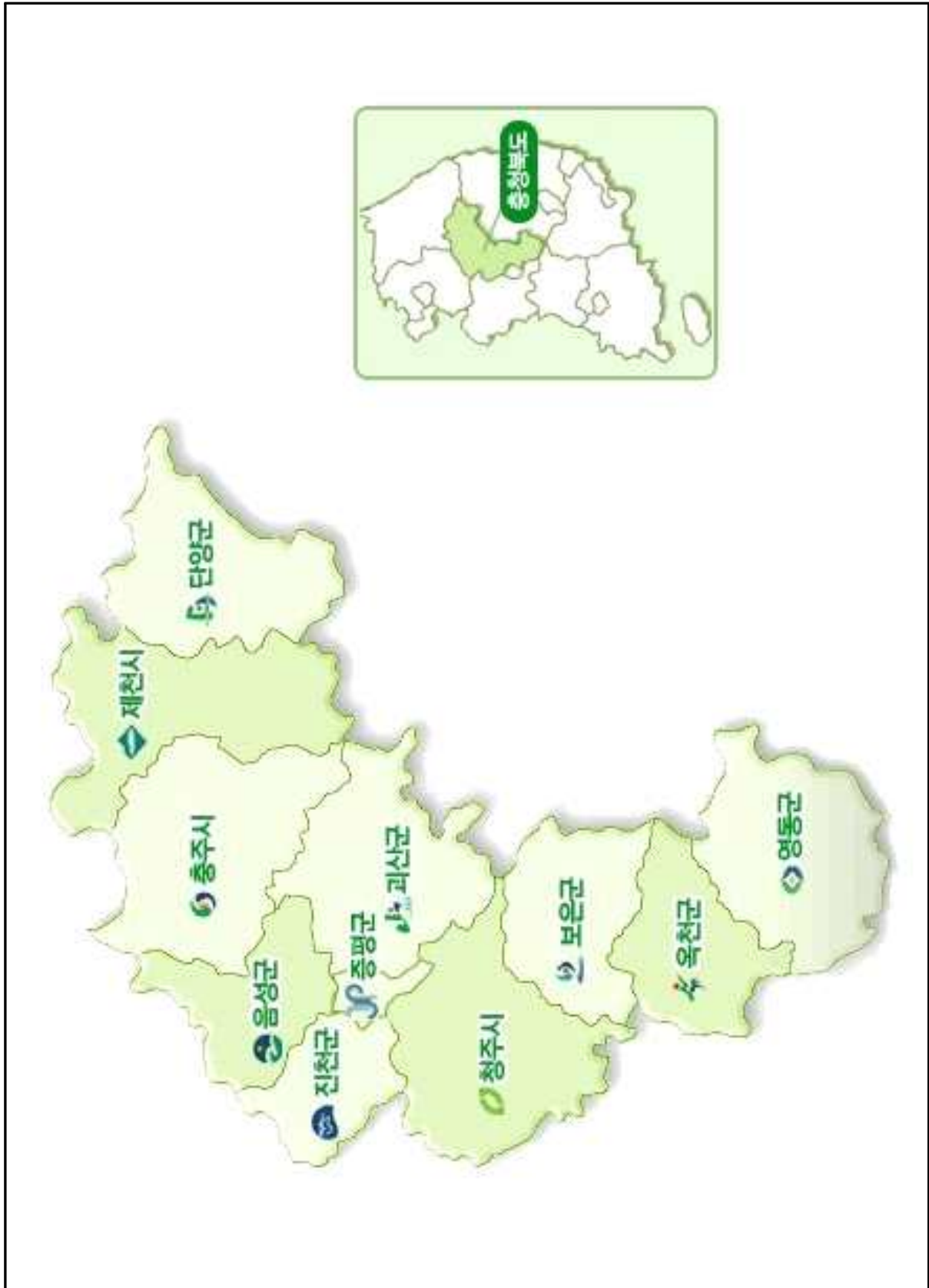
구 분	세부과제	분야	주체
<b>관리</b>			
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	◦ (총)단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	생활	1
	◦ (총)단양군 생활폐기물 2단계 매립시설 증설사업	생활	1
	◦ (총)보은군 용암매립시설 증설사업	생활	1
	◦ (총)증평군 연탄리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사업	생활	1
	◦ (총)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	생활	1
	◦ (총)괴산,증평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	생활	1
	◦ (총)진천,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	생활	1
	◦ (총)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	생활	1
	◦ (총)청주시 소각시설 증설사업	생활	1
	◦ (총)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장 증설사업	생활	1
	◦ (타)자원순환기본조례 제정	생활/사업장	2
◦ (타)농업부산물의 불법처리 예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파쇄기 지원	생활	1	
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	◦ (국)시군별 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이행평가	생활	1
<b>재생</b>			
물질재활용 중심의 체계 개선	◦ (국)(타)공공부문 순환골재 사용 확대	사업장	1
	◦ (국)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(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바이오가스화시설)	생활	1
	◦ (타)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(상하반기 도 와 시·군 합동점검 실시)	사업장	1
	◦ (타)사업장폐기물 관련 교육(올바로시스템 사용법,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)	사업장	1
	◦ (타)폐전자제품 회수 리사이클 센터 건립	생활	2
Re&Up 사이클링 문화 활성화	◦ (국)(타)권역별 공공시설 활용 Re&Up 사이클링 플라자 조성(서울 새활용플라자 사례 참고)	생활/사업장	1

주1) (국)국가계획 사업, (타)타지자체 모범사업, (총)충청북도 사업  
 2) 1-충청북도 및 시·군 함께(공동), 2-충청북도, 3-시·군



## (6)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

구분	사업명	사업량	비고
매립시설	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	매립용량(110만㎡) 부지면적(224,354㎡)	
	단양군 생활폐기물 2단계 매립시설 증설사업	252,000㎡	
	보은군 용암매립시설 증설사업	60,000㎡/증설	
	증평군 연탄리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사업	매립면적(9,194㎡) 매립용량(54,650㎡)	
소각시설	제천시 소각시설	140톤/일	
	단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	40톤/일	
	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	30톤/일	
	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	30톤/일	
	괴산·증평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	40톤/일	
	진천·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	50톤/일	
	청주시 소각시설 증설사업	100톤/일	
	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장 증설사업 (소각여열회수시설 포함)	70톤/일	
생활자원 회수센터	단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	10톤/일 (재활용선별시설)	
	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	10톤/일 (기계적처리시설)	
	괴산·증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	15톤/일 (재활용처리시설)	
	진천·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	40톤/일 (재활용선별시설)	
	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사업	50톤/일 70톤/일	
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	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	15톤/일	
	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	40톤/일	
	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사업	200톤/일	



( 그림 1 - 1 ) 계획지역 위치도

##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

### 2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개요

#### 2.1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8조(환경영향평가협의회)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
  - 결정사항 :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, 토지이용구상안, 대안,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

#### 2.1.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목적

- 근거법률 :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~제5호, 동법 제11조, 시행령 제3조
  -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, ② 토지이용구상안, ③ 대안, ④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, 범위, 방법 등, ⑤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.

#### 2.1.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

- 근거법률 :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항, 시행령 제4조
  -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, 주민대표,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(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)

#### 2.1.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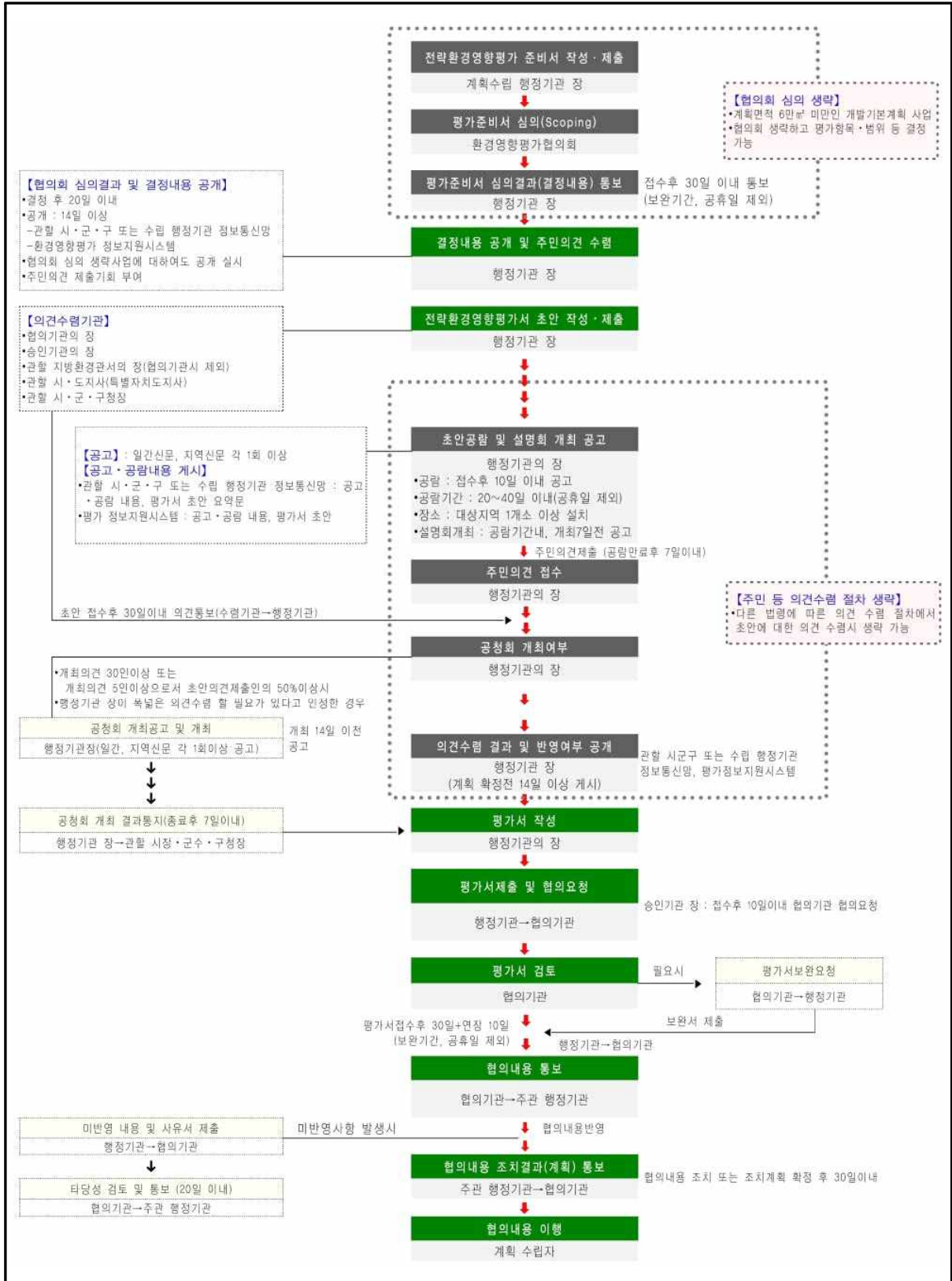
- 근거법률 :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항, 시행령 제5조
  - 환경부장관, 계획 수립기관의 장,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함.

-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구성원 과반수위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.
- 서면 심의
  - ①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②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
  - ③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근거법률 : 시행령 제9조
  - 심의기간 : 환경영향평가 심의기간은 30일이며,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.

### 2.1.5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기능 및 역할

-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함.
  - ① 법 제6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평가 대상지역
  - ② 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당 사업에 적용할 평가항목·범위
  - ③ 제2호에 따라 선정된 평가항목별 조사·예측·평가의 방법
  - ④ 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
  - 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 여부
  - ⑥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식평가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과 협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한 양 의견 간 내용 조정에 관한 사항
  - ⑦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위원장이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### 2.1.6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



## 2.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

### 2.2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·운영

- 심의방법 : 서면심의
- 심의내용
  -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
  - 토지이용구상안
  - 환경보전방안의 대안
  -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- 심의기간 : 2019. 06. 19 ~ 07. 05 (13일간)
- 심의위원 : 협의기관(환경부), 계획수립기관(충청북도), 주민대표 등 포함 총 9명

< 표 2.2 - 1 >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	기 타
위원장	충청북도 환경정책과	환경정책과장	정 ○ ○	
위원	충청북도 자원순환팀	자원순환팀장	강 ○ ○	
위원	충청북도 자원순환팀	자원순환팀	권 ○ ○	
위원	환경부	행정사무관	홍 ○ ○	
위원	금강유역환경청	주무관	남 ○ ○	
위원	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	연구위원	이 ○ ○	
위원	한국교통대학교	교수	연 ○ ○	
위원	청주·충북환경운동연합	사무처장	이 ○ ○	
위원	청주시이·통장협의회	회장	이 ○ ○	

## 2.2.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

구분	심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■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 정○○ 위원			
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	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◦ 계획의 범위가 충청북도 전역으로 지역특성, 환경적인 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함.	◦ 충북의 지역특성 및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을 고려토록 하겠음.	반영
	2. 토지이용 구성안 ◦ 의견없음	-	
	3. 대안 ◦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자원순환 정책 및 정부정책의 기초에 맞는 정확한 목표 설정과 계량화된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	◦ 제1차자원순환기본계획,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, 등과 같은 폐기물 관련계획들과 충청북도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설정토록 하겠음.	반영
	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◦ 폐기물 관련 계획들과 연계성, 일관성, 적정성, 지속성 등을 검토하여야 함.	◦ 본 계획은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여 자연환경의 보전, 생활환경의 안정성, 사회·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, 계획의 연계성·일관성은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으로 다루며, 계획의 적정성·지속성은 기존의 입지의 타당성에서 평가하였음.	반영
	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◦ 본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·반영하여야 하며, 지역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어야 함.	◦ 본 계획에 대하여 충북도청 홈페이지 및 E-ASS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, 초안보고서는 지역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겠음.	반영
	6. 기타 ◦ 자원순환정책의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필요	◦ 충청북도, 시·군, 지역전문가, 단체, 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여, 자원순환정책의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·관리를 지향하겠음	반영

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

구분	심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<p>■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 강○○ 위원</p>			
<p>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</p>	<p>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                    ◦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확대·설정하고 설정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야 함</p>	<p>◦ 충청북도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, 설정사유를 명기하였음.</p>	반영
	<p>2. 토지이용 구성안                      ◦ 의견없음</p>	-	
	<p>3. 대안                      ◦ 의견없음</p>	-	반영
	<p>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                     ◦ 계획의 연계성·일관성·적정성·지속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, 본 계획과 관련이 있는 국제 환경동향·협약·규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</p>	<p>◦ 본 계획은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여 자연환경의 보전, 생활환경의 안정성, 사회·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, 계획의 연계성·일관성은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으로 다루며, 계획의 적정성·지속성은 기존의 입지의 타당성에서 평가토록 함.</p>	반영
	<p>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                   ◦ 본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, 수렴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진행하여야 함.</p>	<p>◦ 본 계획에 대하여 충북도청 홈페이지 및 EIAASS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, 수렴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진행하겠음.</p>	반영
	<p>6. 기타                      ◦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등에 대한 교육 필요</p>	<p>◦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하겠음</p>	반영
<p>■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 권○○ 위원</p>			
<p>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</p>	<p>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                    ◦ 의견없음</p>	-	반영
	<p>2. 토지이용 구성안                      ◦ 관련계획들과 연계성, 일관성, 적정성, 지속성 등을 검토</p>	<p>◦ 본 계획은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여 자연환경의 보전, 생활환경의 안정성, 사회·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, 계획의 연계성·일관성은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으로 다루며, 계획의 적정성·지속성은 기존의 입지의 타당성에서 평가토록 함.</p>	반영



구분	심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<p>■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 권○○ 위원</p>			
<p>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</p>	<p>3. 대안                      ◦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대안에 제시</p>	<p>◦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을 대안으로 선정하였음.</p>	반영
	<p>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                     ◦ 자원순환기본법상 강조되는 평가 항목이 무엇인지를 설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</p>	<p>◦ 자원순환기본법을 토대로 중점 평가항목 및 일반평가항목을 설정 하도록 하겠음.</p>	반영
	<p>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                   ◦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는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</p>	<p>◦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본 계획에 대하여 충북도청 홈페이지 및 EIASS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, 수렴된 주민 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·시행 하겠음.</p>	반영
	<p>6. 기타                      ◦ 의견없음</p>	-	-
<p>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홍○○ 위원</p>			
<p>총괄의견</p>	<p>◦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는 협의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, 「환경영향평가법」,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따라 작성</p>	<p>◦ 본 협의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 하고, 「환경영향평가법」,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따라 작성하겠음.</p>	반영
<p>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</p>	<p>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                    ◦ 신규시설 설치 또는 기존시설 보수시 설정하는 평가항목 범위가 관할구역 (충청북도)경계를 넘어 인접 시·도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,                      - 해당지역 범위까지 확대하여 대상 지역을 설정하여야 함.</p>	<p>◦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보수시 평가항목 범위가 충청북도 경계를 넘어갈 경우 해당지역 범위까지 대상지역을 설정하겠음.</p>	반영
	<p>2. 토지이용 구성안                      ◦ -</p>	-	-
	<p>3. 대안                      ◦ -</p>	-	-
	<p>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                     ◦ 대상지역은 한강·금강수계에 해당 하고, 폐기물처리시설 특성상 오염 유발 물질·민원 등에 취약할수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     - 평가항목에 ‘수리·수문’, ‘악취’ 및 ‘위생·공중보건’을 포함하여야 함</p>	<p>◦ 현 단계는 계획단계이며, 수리 수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으며, 악취 및 위생공중보건은 사업의 특성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항목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였음.</p>	반영

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

구분	심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<p>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홍○○ 위원</p>			
<p>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역 사회에 미치는 환경·사회적 영향이 큼 - 대기, 악취 등의 영향 권역을 보다 넓게 설정하고, 폭 넓은 대상과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.</li> <li>※ '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(협의기관:금강유역환경청)' 참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 계획은 계획단계이며,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대기,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할 경우, 폭 넓은 대상과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음.</li> </ul>	반영
	<p>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므로, 각각의 시·군·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함이 바람직함.</li> <li>※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5조제2항 및 단서참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각 시·군·구 설명회 개최는 해당 시·군·구와 협의하여 설명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음.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서 초안(요약서)을 작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겠음.</li> </ul>	반영
	<p>6. 기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환경보건법」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, 해당시 협의회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를 추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 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실시계획시 실시하는 건강영향평가 실시대상여부에 해당되지 않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제1차 시·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지침(18.9.환경부)'을 준수하여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작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"제1차 시·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지침"을 준수하여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작성하겠음.</li> </ul>	반영
<p>■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남○○ 위원</p>			
<p>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</p>	<p>1. 토지이용구성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시설계획은 1:3,000~1:25,000도에 구상안을 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 단계는 계획단계이며, 추후 계획시행시 구체적 입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1:3,000~25,000도에 구상안을 제시하겠음.</li> </ul>	반영
	<p>2. 대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안설정은 제시한 계획비교, 수단·방법 외에도 시기·순서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최종 선정된 대안에 대한 선정사유를 명확히 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안설정은 제시한 계획비교, 수단·방법 외에도 시기·순서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최종 선정된 대안에 대한 선정사유를 제시하였음.</li> </ul>	반영

구분	심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<p>■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남○○ 위원</p>			
<p>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</p>	<p>- (계획비교)Action/No Action외에도 이전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, 주요계획 내용을 유지할 경우와 금회 계획을 적용할 경우를 대안으로 선정</p>	<p>-(계획비교)이전계획을 유지할 경우와 금회계획을 적용할 경우를 대안으로 설정하여 비교·검토하였음.</p>	<p>반영</p>
	<p>- (계획비교)인구증가,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 감량, 순환이용율, 에너지회수율 등에 대하여 다수의 목표치를 대안으로 설정</p>	<p>-기존의 총괄지표 및 핵심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목표치 비교·검토가 아닌 이전계획과 금회계획의 세부계획 비교·검토를 통한 대안을 설정하였음.</p>	
	<p>- (수단·방법)소각, 매립, 재활용율에 따라 대기질, 수질 및 온실가스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비율(목표치)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 정도를 비교·검토</p>	<p>-(수단·방법)소각,매립,재활용 비율이 목표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영향예측을 평가하겠음.</p>	
	<p>- (시기·순서)중점과제에 대하여 시급성, 실효성,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기·순서에 대한 대안을 설정</p>	<p>-(시기·순서)추진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하여 효율성, 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기·순서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겠음.</p>	
	<p>4. 대상지역,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,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                      ◦ 별도 의견 없음</p>	-	-
<p>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○○ 위원</p>			
<p>총괄의견</p>	<p>◦ 금번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연차별 시기·순서 총괄(57쪽)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.</p>	<p>◦ 연차별 시기·순서 총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.</p>	<p>반영</p>
	<p>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할 경우 연차별 폐기물 증가율 및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.</p>	<p>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연차별 폐기물 증가율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였음.</p>	<p>반영</p>
<p>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</p>	<p>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                    ◦ 의견없음</p>	-	-
	<p>2. 대안                      ◦ 의견없음</p>	-	-
	<p>3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                     가.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                     ◦ 금회 제시된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(11쪽)은 구체적인 내용(개선방안, 목표, 미달성시 대책 등)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되어야 하며 목표달성에 영향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함.</p>	<p>◦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초안보고서에 제시하고, 목표달성에 대한 영향여부도 명확히 하였음.</p>	<p>반영</p>

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

구분	심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<p>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○○ 위원</p>			
<p>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장폐기물(사업장배출시설계+지정폐기물)발생량을 직접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함.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제시된 폐기물 발생량은 발생량 집계액의 신뢰성 및 정확성이 미흡하므로 개별 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량을 산업단지관리공단, 지자체 및 올바로 시스템상 폐기물 집계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단계는 계획단계로, 추후 실시시설계 개별 산업단지의 폐기물발생량을 산업단지관리공단, 지자체 및 올바로 시스템상 폐기물 집계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음.</li> </ul>	<p>미반영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한 전수조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 단계는 계획단계임, 추후 실시시설계 단계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음.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올바로시스템 등록여부 확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 단계는 계획단계임, 추후 실시시설계단계시 올바로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하겠음.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중 올바로시스템 미등록 업체일 경우 폐기물관리대장 및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확인 등을 통한 폐기물 발생량 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 단계는 계획단계임, 추후 실시시설계단계시 폐기물관리대장 및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확인 등을 통한 폐기물발생량을 제시하겠음.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해당시설의 처리물질별 발생량, 설계용량 및 실제 처리량을 제시하고 추가 시설확충 필요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기초시설의 처리물질별 발생량, 설계용량 및 실제처리량을 제시하고 추가 시설확충 필요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겠음.</li> </ul>	<p>반영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충청북도내 소각시설의 처리 가능 용량은 가연성폐기물 발생량 대비 상당부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시설 확충여부 또는 타지자체 연계처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</li> <li>※대상지역 설정에서 '금회 수립되는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규설치 계획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'되었다고 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살펴볼 경우 추가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단계는 계획단계임. 추후구체적인 계획수립후 실시시설 단계시 충청북도내 소각시설의 추가시설 확충여부, 타지자체 연계처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·제시하겠음</li> </ul>	<p>추후 반영</p>
	<p>나. 평가항목별 현황조사,영향예측 계획 등의 범위·방법 선정 및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지자체의 폐기물 발생량 현황조사 및 처리방식 조사·제시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충청북도의 폐기물발생량 현황 및 처리방식을 제시하였음.</li> </ul>	<p>반영</p>

구분	심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<p>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○○ 위원</p>			
<p>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폐기물 처리방식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확인</li> <li>- 자자체내 폐기물적정처리여부 확인</li> <li>- 자자체내 폐기물 적정처리가 불가할 경우 연계처리 방안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</li> <li>- 자원순환이용률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</li> <li>-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필요시설 파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폐기물처리방식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확인·제시하였음.</li> <li>○ 자자체내 폐기물적정처리여부를 확인하였음.</li> <li>○ 자자체내 폐기물적정처리가 불가할 경우 연계처리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음.</li> <li>○ 자원순환이용률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음</li> <li>○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필요시설 파악하여 제시하였음.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내 입주업체를 상대로 재활용 증진 폐기물 종류 분석 및 해당 폐기물 종류의 재활용시설 현황조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계획은 계획단계임, 추후 시설계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내 입주업체를 상대로 폐기물종류 분석 및 해당폐기물 종류의 재활용시설 현황조사를 제시하였음</li> </ul>	추후 반영
	<p>4.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.공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민센터, 마을회관등 주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곳에 본 사업의 목적, 추진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설명 등 계획수립 전반에 대한 내용을 주민이 충분히 이해·인지할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된 홍보물을 20일 이상 부착하여 사업지구 인근 모든 주민에게 이를 공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계획은 계획단계이며, 본 계획에 대하여 충북도청 홈페이지 및 EIASS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, 수렴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진행하겠음.</li> </ul>	반영
	<p>나.공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과학용어가 사용된 문서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직·간접적인 환경적, 사회적,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, 인포그래프(그림, 표 등)을 최대한 활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요약본을 별도 비치하는 방안 검토</li> <li>- 특히,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악취, 비산먼지, 폐기물 운반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계획은 계획단계이며, 본 계획에 대하여 충북도청 홈페이지 및 EIASS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, 수렴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진행하겠음.</li> <li>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따른 실시계시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, 비산먼지, 폐기물 운반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겠음.</li> </ul>	반영  추후 반영

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

구분	심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<p>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○○ 위원</p>			
<p>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</p>	<p>다.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일정(일시 및 장소)은 가급적 주민참여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개최 일정을 수립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설명회는 가급적 주민참여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개최일정을 수립하겠음.</li> </ul>	반영
	<p>5.기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견없음</li> </ul>	-	-
<p>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○○ 위원</p>			
<p>총괄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“감량-재사용-재활용-에너지재활용-안전처리”라는 기본방향은 적절하게 설정하였음.</li> </ul>	-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“발생 최소화. 최대한 재사용/재활용, 최소한 매립 소각”이라는 내용을 정책추진 방향에 표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 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,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 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제시 및 충북도내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·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자원순환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고,</li> <li>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「충청북도자원순환시행계획」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예측·분석, 영향의 저감 대책마련 등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, 건전성, 지속가능성과 부합성, 일관성 있는 검토를 전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또한 준비서 9쪽의 폐기물발생량 예측은 전반적인 인구감소와 폐기물 발생 억제정책은 반영되지 않은 예측으로 판단됨</li> </ul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따라서 충청북도의 강력한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을 반영하여 폐기물 발생량 예측을 다시해야 함</li> </ul>		
<p>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</li> </ul>	-		-
<p>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</p>	<p>2. 토지이용 구성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가장 환경 부하가 적고 주민민원 발생이 적은 지역 선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부적인 계획 수립후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는 환경부하가 적고 주민민원 발생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겠음.</li> </ul>	추후 반영
	<p>3. 대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</li> </ul>	-	-
	<p>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시행으로 악취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가항목에 포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악취 항목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였음.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시행으로 위생·공중보건 영향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가항목에 포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생·공중보건 항목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였음.</li> </ul>	

구분	심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<p>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○○ 위원</p>			
<p>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폐기물처리시설이 한남금북정맥 등 주요 산림축을 훼손할수 있기 때문에 입지의 타당성 검토항목에 포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형지질항목이 포함되어 있음.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폐기물처리시설이 경관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의 타당성 검토항목에 포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관항목이 포함되어 있음.</li> </ul>	
	<p>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</li> </ul>	-	
	<p>6. 기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활폐기물 처리가 지자체 사무임을 명확히 하고, 현재 많은 부분 민간에서 대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다시 지자체 업무로 편입하는 방안 포함하여 계획 수립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 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임.</li> </ul>	추후 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발가능성이 있는 쓰레기 수거 대란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의 재활용선별장 확대 및 수집 운반업체 지자체 운영 방안도 포함되어야 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 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,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제시 및 충북도내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·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자원순환 이용을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임.</li> </ul>	추후 반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소비 교육이 성인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특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 단계는 기본계획 단계이며, 사업대상자 특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음.</li> </ul>	추후 반영	
<p>■ 한국교통대학교 연○○ 위원</p>			
<p>총괄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고서 작성시 각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 언급이 필요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충북도청 홈페이지 및 EIASS에 내용게시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, 각 지자체와 주민의견 제출시 반영된 내용을 보고서에 언급하겠음.</li> </ul>	반영
<p>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</p>	<p>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계획의 범위가 충북 전역이므로 시·군별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충북의 지리적 특성 및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역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을 고려토록 하겠음.</li> </ul>	반영
	<p>2. 토지이용 구성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견없음</li> </ul>	-	-

구분	심의의견	조치결과	비고
<p>■ 한국교통대학교 연○○ 위원</p>			
<p>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</p>	<p>3. 대안 ◦ 대안설정은 최종선정한 대안에 대한 선정사유를 명확히 제시</p>	<p>◦ 최종선정한 대안에 대한 선정 사유를 제시하였음.</p>	반영
	<p>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 ◦ 폐기물 관련 계획들과 연계성, 일관성, 적정성, 지속성, 목표의 충족성 등을 검토</p>	<p>◦ 본 계획은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여 자연환경의 보전, 생활환경의 안정성, 사회·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, 계획의 연계성·일관성은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으로 다루며, 계획의 적정성·지속성은 기존의 입지의 타당성에서 평가 하였음.</p>	반영
	<p>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◦ 본 계획수립시 주민의견 반영</p>	<p>◦ 본 계획에 대하여 충북도청 홈페이지 및 EIAASS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,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음.</p>	반영
	<p>6. 기타 ◦ 기존 자원순환 관련계획 부분별 세부평가 내용을 본 보고서에 기재하였으면 함</p>	<p>◦ 본 계획은 기본계획 단계이며, 세부평가내용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실시계획시, 보고서에 기재하겠음.</p>	추후 반영



## 2.3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

### 2.3.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평가준비서 심의내용을 공개하였음.
- 공개기간 : 2019. 07. 25 ~ 2019. 08. 08(15일)

충청북도 공고 제2019- 932호

#### 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

‘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’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개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7월 25일  
충청북도지사



#### 1. 계획의 개요

- 계획명 : 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
- 공간적범위 : 충청북도 전지역(3개시, 8개군)
- 시간적범위 : 2018~2022년(5년간)
- 시행자 : 충청북도

#### 2. 공개개요

- 공개기간 : 2019. 07. 25 ~ 08. 08(15일간)
- 공개방법 : 충청북도청 홈페이지(<http://www.chungbuk.go.kr>),  
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<http://www.eiass.go.kr/>) 게재
- 공개내용 :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[붙임 1]

#### 3. 의견 제출

- 제출기간 : 공개기간 내
- 제출방법
  - 1) [붙임 2] 서식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
  - 2)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
- 제출장소 :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, 충청북도 환경정책과

#### 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환경정책과(043-220-404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

고시/공고 조회
목록

고시/공고 번호	2019-932	구분	공고
담당자	안경진	전화번호	043-220-4044
담당부서	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		
제목	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		

**내 용**

충청북도 공고 제2019- 932호

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

‘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’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개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7월 25일

충청북도지사

게재 일자	2019-07-25
첨부파일	공고문.hwp 주민의견 제출서(양식).hwp 자원순환시행계획(평가항목결정내용공개).pdf

담당부서
담당자(전화번호)
안경진(043-220-4044)

충청북도 홈페이지

---

###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- 전략환경영향평가

* 사업명	충청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
* 사업자	충청북도
* 협의기관	환경부
* 승인기관	환경부
결정내용	
* 결정내용파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고문(충청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).pdf</li> <li>• 주민의견 제출서(양식).pdf</li> <li>• 충청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(평가항목결정내용공개).pdf</li> </ul>

결정내용공개
주민의견수렴

* 공고일	2019.07.25
* 공람기간	2019.07.25~2019.08.08
* 의견제출기간	2019.07.25~2019.08.08
부서명	

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

### 2.3.2 주민의견 수렴

#### 가.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에 따른 주민의견

- 주민의견 없음

##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

### 3.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

-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.

< 표 3.1 - 1 >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

평가항목	항 목	평가대상지역 선정 사유	평가대상지역	
1) 계획의 적정성				
국가환경정책		○ 계획수립에 따른 국가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검토	충청북도 전역	
국제 환경 동향·협약·규범		○ 계획수립에 따른 국제환경 동향·협약·규범 등 각종 환경 협약등에 관한 사항과의 부합성 검토		
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		○ 본 계획의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		
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		○ 자원순환기본법 등의 관련 계획 목표와의 부합성 검토		
2) 입지의 타당성				
자연환경 보 전	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	동·식물상	○ 본 계획으로 인하여 동·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충청북도 전역
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지형·지질	○ 본 계획으로 인해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경 관	○ 생태적·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및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
	수환경의 보전	수 질	○ 본 계획시 주변수계의 직·간접적 영향지역	
생활환경 안정성	환경기준 부 합 성	기 상	○ 기상현황파악	충청북도 전역
		대 기 질	○ 계획시행으로 인해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○ 계획시행으로 인해 차량이동 및 운영에 따른 대기영향 예상지역	
		온실가스	○ 계획시행으로 인해 투입장비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○ 계획시행으로 인해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우려지역	

( 표 계속 )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

평가항목		항 목	평가대상지역 선정 사유	평가대상지역
생활환경 안정성	환경기준 부합성	소음·진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계획시행으로 인해 투입장비에 따른 소음·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</li> <li>◦ 계획시행으로 인해 운행차량에 따른 소음·진동이 예상되는 지역</li> </ul>	충청북도 전역
		토 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계획시행으로 인해 장비가동·폐유저장소 설치등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지역</li> <li>◦ 계획시행으로 인해 사업시행에 따른 토양오염우려지역</li> </ul>	
		약 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계획시행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약취발생이 예상되는 지역</li> </ul>	
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계획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·폐수, 폐기물을 연계처리가능 지역</li> </ul>	
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친환경적 자원순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계획시행 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</li> </ul>	
사회·경제 환경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계획시행으로 인해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</li> </ul>	충청북도 전역
	인구 및 주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계획시행 시 인구 및 주거변화가 예상되는 지역</li> </ul>	
	산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계획시행 시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지역</li> </ul>	
	위생·공중보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계획시행시 사업시행으로 위생·공중보건등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</li> </ul>	

### 3.2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측·평가 및 관련자료

-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함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사용한 예측·평가방법 및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.

< 표 3.2 - 1 >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·평가방법 및 관련자료

평가항목		평가범위	예측방법	
계획의 적정성	국가환경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환경계획 및 시책과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여부</li> </ul> </li> </ul>	-기존자료 및 문헌조사	
	국제환경 동향·협약·규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, 조약, 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	
	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</li> <li>- 관련부처(환경부)계획과의 연계성</li> </ul> </li> </ul>	-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(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,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, 충청북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)	
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련 상위 행정계획 및 타 행정 계획간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여부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		
입지의 타당성	자연환경보전	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연현황(식생현황,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,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)</li> </ul> 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-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자료
	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: 지형형상, 지질상황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-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자료 -지형의 변화, 토지 및 사면의 안정성 등을 예측
	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: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-기존자료 및 문헌자료 조사 -문헌조사를 통한 경관영향 검토 -자연의 훼손정도, 조망의 변화 예측
		수환경의 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류수계에 대한 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</li> <li>- 계획대상지 주변의 오수처리 현황</li> </ul> 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-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-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용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-수질오염 총량 관리기술지침에 따른 발생 오·폐수 부하량 산정

( 표 계속 )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·평가방법 및 관련자료

평가항목		평가범위	예측방법		
입지의 생활환경 안정성 타당성	환경기준 부합성	기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- 기온, 강수량, 상대습도, 강수 일수, 풍향 등 기상현황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충청북도내 기상청의 10년간 (2008~2017) 기상자료 이용</li> <li>-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이용</li> </ul>	
		대기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-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대기 오염도,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한 배출량 산정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자료</li> <li>-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대기 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시행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</li> </ul>	
		온실가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- 온실가스 발생상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실시</li> <li>- 계획시행에 따른 고정, 이동배출원 등의 온실가스 발생 및 녹지 공간에 의한 온실가스 감소량 발생 예측</li> </ul>	
		토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- 계획지역의 토양오염 조사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실시</li> <li>-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 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시행 및 운영시 토양에 미치는 영향 예측</li> </ul>	
		악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: 계획지역의 악취 조사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자료</li> <li>- 계획시행이 악취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</li> </ul>	
		소음·진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- 소음의 상황 및 주요발생원 조사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자료</li> <li>- 계획시행시 소음·진동이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소음·진동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예측</li> </ul>	
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- 하수종말처리장, 폐기물처리 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현황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</li> </ul>		
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- 폐기물, 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</li> <li>- 폐기물발생원단위 등을 통한 발생량 분석</li> </ul>		
	사회·경제 환경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토지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: 토지이용 현황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</li> <li>-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분석</li> </ul>
			인구·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: 인구 및 주택현황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</li> </ul>
산업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: 산업 및 농업현황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</li> </ul>	
위생·공중 보건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조사내용 : 위생·공중보건 현황</li> <li>◦ 조사범위 : 충청북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</li> </ul>	



( 그림 3.2 - 1 ) 평가대상지역 범위 설정도

## 제4장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

### 4.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

- 본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.

구 분	평가항목		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
자연 환경의 보전	생물다양성· 서식지 보전	동·식물상	◦ 계획시행시 토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확산으로 인하여 주변식생의 생육 및 생산력 감소 예상
	지형 및 생태축보전	지형·지질	◦ 계획시행시 절성토에 의한 토공발생 ◦ 계획시행시 토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발생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경관	◦ 계획시행시 절·성토 등으로 지형의 변화 및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자연경관변화가 예상됨.
	수환경의 보전	수질	◦ 계획시행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, 토사유출 및 비점오염원 증가로 일시적인 수질오염물질 배출증가
생활 환경의 안정성	환경기준 부 합 성	대기질	◦ 계획시행시 비산먼지 및 공사장비에 의한 배기가스 등 대기 오염물질 발생
		온실가스	◦ 계획시행시 투입장비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
		소음·진동	◦ 계획시행시 건설장비의 소음·진동 발생에 따른 인근 정온 시설의 영향
		토양	◦ 계획시행시 장비가동·폐유저장소 설치에 따른 토양오염 발생
		악취	◦ 계획시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악취발생
		친환경적 자원순환	◦ 투입장비의 폐유발생으로 인한 주변 토양오염 우려 ◦ 작업인부 투입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 산업		◦ 계획시행시 편입토지 발생
	위생·공중보건		◦ 계획시행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생·공중보건의 영향



## 나. 환경영향 저감대책

-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음

구 분	평가항목		저 감 방 안
자연 환경의 보전	생물다양성·서 식지 보전	동·식물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차량이동로 및 주요분진발생 지역에 살수작업 실시, 세륜시설 운영</li> <li>저소음·저진동의 공사공적을 수립, 공사차량 속도제한, 야간공사는 지양, 주요 번식기 피하여 공사 실시</li> </ul>
	지형 및 생태축보전	지형·지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절·성토에 의한 사면 안정대책으로 절·성토부의 법면 구배를 조정</li> <li>비탈면 보호공법으로 식생보호공법 및 구조물 보호공법 적용</li> </ul>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경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지의 지형·지질이나 기후조건, 기대효과에 대해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사면녹화공법 선정</li> <li>인공구조물 설치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계획</li> </ul>
	수환경의 보전	수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토사유출 저감대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토사유출 방지망을 설치하여 토사유출 최대한 억제</li> <li>-가배수로를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설치·운영</li> </ul> </li> <li>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건설자재 등이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덮개 처리</li> <li>-강우시 콘크리트나 레미콘 타설작업을 금지하며 철근구조물 등이 빗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</li> </ul> </li> </ul>
생활 환경의 안정성	환경기준의 부 합 성	대기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사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공사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, 급정지 등의 규제로 배기가스 발생량 최소화</li> <li>-작업장내의 주기적인 살수 및 살수시설의 설치 운영</li> <li>-차량 운행속도의 제한 : 20km/hr</li> </ul> </li> </ul>
		온실가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사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공사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, 급정지 등의 규제로 온실가스 발생량 최소화</li> </ul> </li> </ul>
		소음·진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저감대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발생시간의 제한(08:00~18:00), 저소음·저진동 기계사용</li> <li>-장비의 동시투입이나 집중투입을 지양하는 효율적인 투입방법을 고려</li> <li>-가설방음판넬 설치</li> </ul> </li> </ul>
		토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폐유의 처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장비가동 전에 점검 실시 및 공사장비의 정비, 오일교환, 세척 등은 지정된 정비업소 등으로 유도</li> </ul> </li> </ul>
		약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약취저감시설 운영</li> </ul>
		친환경적 자원순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폐유의 처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장비가동 전에 점검 실시 및 공사장비의 정비, 오일교환, 세척 등은 지정된 정비업소 등으로 유도할 계획</li> </ul> </li> <li>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처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분리수거함 및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후 주기적으로 위탁처리</li> </ul> </li> </ul>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 산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편입용지 보상은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에 의거 법적절차에 따라 관계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후 처리</li> </ul>
	위생·공중보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회피, 최소화, 조정, 감소 보상등 최적의 저감대책 수립</li> </ul>